

<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급적용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감면적용 요령 >

1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개정사항

-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일부를 이동·추가하는 내용 등으로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(25.11.28.), 아래의 내용을 소급 적용토록 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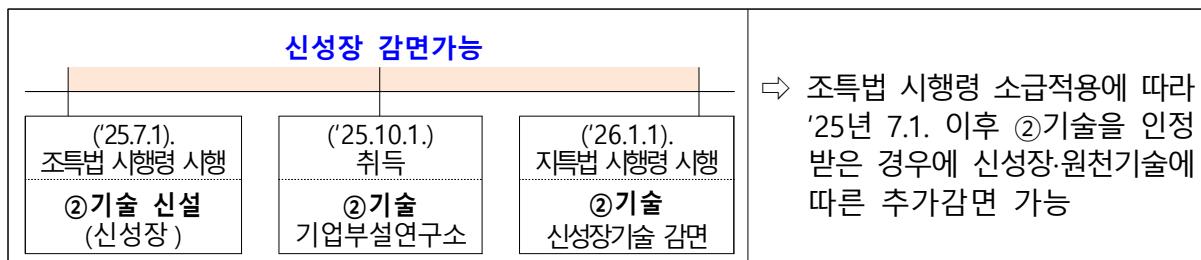
기술	내용	시행일
신성장· 원천	① (국가전략기술 이동) 미래형자동차-자율주행차-탑승자 인지 기술	'25.7.1.
	② (추가) 방위산업-글로벌 공급망 진입·안정화 기술	'25.7.1.
국가전략	③ (추가) 인공지능 분야, 미래형운송수단-인공지능형 자율운항 등	'25.1.1

2. 조특법 시행령 개정(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)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감면적용 요령

- ① (기존신성장→현행국가전략기술 이동) 미래형자동차-자율주행차-탑승자 인지 기술



- ② (신성장·원천기술 추가) 방위산업-글로벌 공급망 진입·안정화 기술



- ③ (국가전략기술 추가) 인공지능 분야, 미래형운송수단-인공지능형 자율운항 등

